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7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5월 25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조례의 근거법령이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’21. 6. 10. 시행)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근거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인용하는 내용을 정비하고, 세종대로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종대로 가로수 관리범위를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인용하는 근거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정비함(안 제1조 및 제18조의2).
- 나. 근거법령 개정으로 「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이 ‘도시림’에서 ‘도시숲’으로 개정되는 사항을 반영함(안 제7조의2).
- 다. 세종대로의 가로수를 관리하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와 자치구간 세종대로 가로수의 관리범위를 변경함(안 별표 1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2) 입법예고('21. 4. 1.~4. 21.)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”을 “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”를 “「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”로, “서울특별시 도시림등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18조의2제1항 중 “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”을 “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표 1 구분란 제2호 중 “세종대로(광화문 삼거리 ~ 대한문 앞)”을 “세종대로(광화문 삼거리 ~ 서울역 사거리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산림자원</u>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 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7조의2(가로수 심의위원회) 관리청은 다음 각 호 사항을 「<u>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」 제4조에 따른 <u>서울특별시 도시림등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</u>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제18조의2(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) ① 「<u>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21조제1항 각 호의 행위 등(이하 “가로수 조성 등”이라 한다)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도시숲 등</u>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7조의2(가로수 심의위원회) -- ----- 「<u>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」 제4조----- <u>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</u>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의2(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) ① 「<u>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12조제2항 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
<p>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[별표 1]</p> <p>가로수관리청(제3조제2호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관리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자동차 전용도로의 가로수 설치·관리와 특별시도 신설시의 가로수 설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안전총괄실장</td> </tr> <tr> <td>2. <u>세종대로(광화문 삼거리 ~ 대한문 앞)</u>의 가로수 설치·관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</td> </tr> <tr> <td>3.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의 가로수 설치 및 관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청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관리청	1. 자동차 전용도로의 가로수 설치·관리와 특별시도 신설시의 가로수 설치	안전총괄실장	2. <u>세종대로(광화문 삼거리 ~ 대한문 앞)</u> 의 가로수 설치·관리	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	3.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의 가로수 설치 및 관리	구청장	<p>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1]</p> <p>가로수관리청(제3조제2호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관리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자동차 전용도로의 가로수 설치·관리와 특별시도 신설시의 가로수 설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안전총괄실장</td> </tr> <tr> <td>2. <u>세종대로(광화문 삼거리 ~ 서울역 사거리)</u>의 가로수 설치·관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</td> </tr> <tr> <td>3.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의 가로수 설치 및 관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청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관리청	1. 자동차 전용도로의 가로수 설치·관리와 특별시도 신설시의 가로수 설치	안전총괄실장	2. <u>세종대로(광화문 삼거리 ~ 서울역 사거리)</u> 의 가로수 설치·관리	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	3.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의 가로수 설치 및 관리	구청장
구 분	관리청																
1. 자동차 전용도로의 가로수 설치·관리와 특별시도 신설시의 가로수 설치	안전총괄실장																
2. <u>세종대로(광화문 삼거리 ~ 대한문 앞)</u> 의 가로수 설치·관리	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																
3.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의 가로수 설치 및 관리	구청장																
구 분	관리청																
1. 자동차 전용도로의 가로수 설치·관리와 특별시도 신설시의 가로수 설치	안전총괄실장																
2. <u>세종대로(광화문 삼거리 ~ 서울역 사거리)</u> 의 가로수 설치·관리	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																
3.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의 가로수 설치 및 관리	구청장																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발생요인 :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가로수 관리구간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
 - ▶ 연간 유지관리 예상 비용 : 481백만원
 - 기간제근로자 인건비(9명) : 213백만원
 - 사무관리비, 공공운영비 등 : 28백만원
 - 재료비 및 시설비 : 240백만원
- 관련조문 : 「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」 별표 1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 - ▶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관리구간 변경으로 인해 증액되는 관리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임.

4. 작성자

- 푸른도시국 조경과 이진범(02-2133-2124)